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42
----------	-----

2024. 11. 27.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2024. 11. 4. 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7.)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안전교통국장)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입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

나. 세출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다. 띄어쓰기 및 용어 등 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27.~2024.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와 제4조의 주요내용으로 세입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을 수입으로 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세출규정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

자상환” 을 세출로 하는 항목을 신설함.

나.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 제3조의 세입과 제4조의 세출 조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영하여야 됨에 따라 다른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특별회계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회계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

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442

제안연월일: 2024. 11. 27.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3조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조문 일부를 현행화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안 제3조제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호(종전의 6호) 중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 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 로 한다.</p> <p>1. (생 략)</p> <p>3. ~ 5. (생 략)</p> <p>6. 「도로교통법」 제16 1조제3호에 따른 과 태료</p> <p>8. (생 략)</p> <p>1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3조(세입)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 제3호부 터 제5호까지와 같 음)</p> <p>5. 「도로교통법」 제16 1조제3호----- ---</p> <p>6. (현행 제8호와 같음)</p> <p>7. (현행 제12호와 같 음)</p> <p>8. 다른 회계 또는 「서 울특별시 강남구 통 합재정안정화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p> <p>9. 다른 회계 또는 기금</p>	<p>제3조(세입)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4. (개정안 제3호 부터 제5호까지와 같 음)</p> <p>5. 「도로교통법」 제16 1조제1항제3호----- ---</p> <p>6. (개정안 제6호와 같 음)</p> <p>7. (개정안 제7호와 같 음)</p> <p>8. (개정안 제8호와 같 음)</p> <p>9. (개정안 제9호와 같</p>

	<u>에 예탁한 자금의 원 금 및 이자 수입</u>	음)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제21조의2”를 “「주차장법」 제21조의2”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4조제6호 중 “설립”을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제8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삭 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삭 제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p>제1조(목적) ----- 「주차장법」 제21조의2----- ----- ----- -----.</p> <p>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 11. 삭 제

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
금의 징수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5. (생 략)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
원의 설립

7.·8.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
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
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
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
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
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
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
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4조(세출) -----

1. ~ 5. (현행과 같음)

6. -----
-- 적립

7.·8. (현행과 같음)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
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
재정법」 제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2
----------	-----

제출연월일 : 2024. 11.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교통행정과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 나. 세출 규정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
- 다. 띄어쓰기 및 용어 등 내용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주차장법」
-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반영 예정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9. 27.~2024.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제21조의2”를 “「주차장법」 제21조의2”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4조제6호 중 “설립”을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제8조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삭 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삭 제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p>제1조(목적) ----- 「주차장법」 제21조의2----- ----- ----- -----.</p> <p>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 11. 삭 제

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
금의 징수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5. (생 략)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
원의 설립

7.·8.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
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
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
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
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
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
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
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4조(세출) -----

1. ~ 5. (현행과 같음)

6. -----
-- 적립

7.·8. (현행과 같음)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
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제8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
재정법」 제9조제3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회계 상호 간,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탁과 예수로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조례의 세입 및 세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 회계연도 결산상 여유재원에 따라 예탁금 및 예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안정연(02-3423-6403)